

주간농업·농촌동향 2009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

2010.05.31 미래정책연구소실

※ 5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임.

□ 조사개요

○ 조사대상기간: 2009년 1월 1일 ~ 12월 31일

○ 조사대상: 7개 축종 1,400농가

<축종별 조사대상>

조사대상 (생산물)	한우번식우 (송아지)	한우비육우 (쇠고기)	육우 (쇠고기)	젓 소 (우유)	비육돈 (돼지고기)	산란계 (계란)	육계 (닭고기)
표본농가수	430호	210호	150호	160호	180호	140호	130호

○ 주요 조사내용

- 가축사육·구입 및 축산물(주·부산물) 판매수입에 관한 사항
- 가축사육에 투입되는 사료비·약품비·수도광열비 등 경영비
- 사양관리 및 사료작물 생산 등의 노동력 투입에 관한 사항
- 토지·건물·대농구에 대한 자본평가액 및 감가상각비 등

□ 조사결과

1) 축종별 생산비

○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비 증가 등으로 조사대상 **모든 축종의 생산비는 전년대비 증가**. 그 중 송아지·비육돈·육계 생산비가 각각 10.9%,

7.6%, 19.5% 증가.

- 송아지생산비(천원/마리) : ('08) 2,467 → ('09) 2,737 (10.9%)
- 비육돈생산비(천원/100kg) : ('08) 222 → ('09) 239 (7.7%)
- 육계생산비(원/kg) : ('08) 1,097 → ('09) 1,311 (19.5%)
- * 사료 농가구입가격지수 : ('08) 155.5 → ('09) 179.5 (15.4% 상승)

<축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>

구분	'08(A)		'09(B)		전년대비			
	경영비	생산비	경영비	생산비	증감(B-A)		증감률(%)	
송아지 (천원/마리)	1,527	2,467	1,689	2,737	162	270	10.6	10.9
한우비육우 (천원/600kg)	4,218	5,212	4,383	5,416	165	204	3.9	3.9
육우 (천원/600kg)	2,894	3,452	3,033	3,670	139	218	4.8	6.3
우유 (원/ℓ)	488	585	512	614	24	29	4.9	5.0
비육돈 (천원/100kg)	209	222	224	239	15	17	7.2	7.7
계란 (원/10개)	1,101	1,155	1,132	1,187	31	32	2.8	2.8
육계 (원/kg)	1,049	1,097	1,255	1,311	206	214	19.6	19.5

주 1) 육우는 '08년부터 조사

주 2) 생산비: 가축비, 사료비 등 제비용 + (자가노력비 + 자본이자)

주 3) 경영비: 생산비 - (자가노력비 + 자본이자)

2) 축종별 소득

○ 가축 산지가격 상승으로 '09년 한우비육우 등 **대부분의 축산물 두당 소득이 증가하였으나, 육계·산란계 소득은 감소하였음**.

- 한우 번식우 두당 소득은 264천 원으로 전년대비 398.1% 증가
- * 송아지 산지가격(4~5개월, 암) : ('08) 1,685 → ('09) 1,788천원(6.2%)

- 한우 비육우 두당 소득은 1,348천 원으로 전년대비 109.0% 증가
 - * 산지가격(600kg, 수컷) : ('08) 3,895 → ('09) 4,385천 원(12.6%)
- 육우 두당 소득은 전년 적자(230천 원)에서 흑자(75천 원)로 전환
 - * 육우 산지가격(600kg) : ('08) 2,550 → ('09) 2,998원(17.6%)
- 젖소 두당 소득은 2,680천 원으로 전년대비 14.0% 증가
 - * 원유 기본가격 : ('07) 584 → ('08. 8월) 704원(20.5%)

<축종별 소득>

구 분	'08			'09			소득 증감	
	조수입	소득 (A)	순수입	조수입	소득 (B)	순수익	증감 (B-A)	증감률 (%)
한우번식우 (천원/마리)	1,296	53	-686	1,595	264	-531	211	398.1
한우비육우 (천원/마리)	5,391	645	-466	6,245	1,348	198	703	109.0
육우 (천원/마리)	3,155	-230	-880	3,636	75	-670	305	-
젖소 (천원/마리)	6,720	2,350	1,520	7,282	2,680	1,796	330	14.0
비육돈 (천원/마리)	305	74	60	357	105	88	31	41.9
산란계 (원/마리)	31,137	36	-1,443	31,857	-847	-2,369	-883	-
육계 (원/마리)	1,986	440	370	2,209	413	333	-27	-6.1

주: 소득 = 조수입 - 경영비, 순수익 = 조수입 - 생산비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농식품전문펀드 결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**

※ 5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농식품전문펀드 결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”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

-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1월 25일 제정 공포된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이 5월 26일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,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,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음.
- 동 시행령은 1월 25일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입법예고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과 함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.
 -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
 - *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 (법률 제9953호)
- 금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생산, 유통, R&D, 신성장동력분야 등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.
 - 특히,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요건,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이 구체화되어 농식품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음.
- 한편, 정부는 농식품모태펀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(6월 중순), 투자조합 선정 및 결성(7~9월)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임.

□ 시행령의 주요 내용

○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

-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함.
-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투자업무관련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사무실, 전산장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.

○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

- 장기간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 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.

○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, 조합원 수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

-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,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49인 이하,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함.

○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취지에 맞게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정함.

-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농식품 경영체에 출자금 중 100분의 60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되, 그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 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함.

□ 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

○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

- 「염관리법」에 따른 염제조업자, 「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곤충의 생산, 가공, 유통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 규정

○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

- 상용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농식품 경영체로 정함.

○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제공

-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.